

제 1171 호
1985. 9. 7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도현
편집인 : 공보관 이광우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전화 : 735-3307

시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586 호 ; 배합사료성분등록 및 등록변경고시 2

제 587 호 ;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5

제 588 호 ;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, 도로, 공원) 지적승인 6

제 589 호 ; 도시계획사업 (도로개설) 실시계획변경인가 7

◎ 사 령

◎ 정 정

내 용										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86 호

배합사료성분등록및등록변경고시

사료관리법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배합사료 성분등록 및 등록변경을 필하였기 동법 제 2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5. 9. 7.
서울특별시 장

1. 신청자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1-5
서울축산업 협동조합장 류 지 만
2. 제조업체명 : 서울특별시 축산업 협동조합
3. 소재지 : 강서구 등촌동 631-5
4. 사료의종류 : 양축용 배합사료
5. 배합사료 성분 등록 및 등록변경 사항
 - 가. 배합사료 성분 등록 (별지 작성)
 - 나. 배합사료 성분 등록 변경 (별지 작성)

사료성분등록 (신규) 내용

등록번호	사료의 명칭 및 동도	사료의 성분량 (%)					
		조단백질	조지방	조섬유	조회분	칼슘	인
11-19	갓 난 돼 지 사료 (4 주 이 하)	이상 2.0	이상 3.0	이하 5.0	이하 8.0	이상 0.8	이상 0.5

사료성분등록 변경내용

구 분	등록번호	사료의 명칭 및 동도	사료의 성분량 (%)					
			조단백질	조지방	조섬유	조회분	칼슘	인
변경전	11-1	어린병아리 (6 주이하)	이상 18.0	이상 3.0	이하 6.0	이하 8.0	이상 0.7	이상 0.5
" 후	11-1	어린병아리사료 (산란계용 : 6 주이하)	18.0	3.0	6.0	8.0	0.7	0.5
" 전	11-2	중병아리 (7 주 ~ 12 주)	16.0	3.0	6.0	9.0	0.7	0.5

구분	등록번호	사료의 명칭 및 용도	사료의 성분량 (%)					
			조단백질	조지방	조섬유	조회분	칼슘	인
변경후	11-2	중병아리 사료 (산란계용: 7-12 주)	이상 16.0	이상 3.0	이하 6.0	이하 9.0	이상 0.7	이상 0.5
전	11-3	큰병아리 (13 주-산란개시전)	12.0	3.0	7.5	9.0	0.4	0.4
후	11-3	큰병아리 사료 (산란계용: 13 주산란개시전)	12.0	2.5	7.5	9.0	0.6	0.4
전	11-4	산란초기 (산란개시후-25 주)	15.0	3.0	6.0	14.0	3.0	0.5
후	11-4	산란초기 사료 (산란개시-40 주)	15.0	2.5	6.0	15.0	3.0	0.5
전	11-7	육계전기 (4 주이하)	19.0	3.0	6.0	9.0	0.7	0.5
후	11-5	육계전기 사료 (4 주이하)	21.0	3.0	6.0	8.0	0.7	0.5
전	11-8	육계후기 I (5 주-출하 8 일전)	17.0	3.0	5.5	8.0	0.7	0.5
후	11-6	육계후기 사료(I) (5 주-출하 8 일전)	17.0	3.0	6.0	8.0	0.7	0.5
전	11-10	종 계	15.5	3.0	7.0	14.0	3.0	0.5
후	11-7	종계 사료 (산란계 또는 육계용)	15.5	2.5	7.0	15.0	3.0	0.5
전	11-11	젓먹이 돼지 (2 개월 미만)	18.5	3.0	5.5	8.0	0.6	0.4
후	11-8	젓먹이 돼지 사료 (4 주-2 개월)	18.0	3.0	5.5	8.0	0.6	0.4
전	11-12	육성돈 (2 개월-4 개월)	15.0	2.5	5.5	8.0	0.6	0.4
후	11-9	육성돈 사료 (2 개월-4 개월)	15.0	2.5	5.5	8.0	0.6	0.4

구분	등록 번호	사료의 명칭 및 용도	사료의 성분량 (%)					
			조단백질	조지방	조섬유	조회분	칼슘	인
변경전	11-14	비육돈후기 (4개월이후)	이상 14.0	이상 2.5	이하 7.0	이하 9.0	이상 0.5	이상 0.4
" 후	11-10	비육돈후기 (후기용)	13.0	2.5	7.0	9.0	0.5	0.4
" 전	11-16	포유돈 (임신3개월-이유기)	15.0	2.5	10.0	10.0	0.5	0.4
" 후	11-11	포유돈사료 (3개월이내)	15.0	2.5	10.0	10.0	0.5	0.4
" 전	11-17	중돈 (중돈용)	13.0	2.5	10.0	10.0	0.5	0.4
" 후	11-12	중돈사료 (중돈용)	13.0	2.5	10.0	10.0	0.5	0.4
" 전	11-18	어린송아지 (3개월이후)	19.0	2.0	6.0	9.0	0.6	0.4
" 후	11-13	어린송아지사료 (3개월이내)	19.0	2.5	6.0	9.0	0.6	0.4
" 전	11-23	착유2 (비유량 18kg이하)	15.0	2.0	10.0	10.0	0.7	0.5
" 후	11-14	착유사료(II) (비유량 17kg이하)	15.0	2.0	10.0	10.0	0.7	0.5
" 전	11-24	착유3 (비유량 19kg이상)	17.0	2.0	9.0	10.0	0.7	0.5
" 후	11-15	착유사료(III) (비유량 18kg이상)	17.0	2.0	9.0	10.0	0.7	0.5
" 전	11-29	육성비육 (4-7개월)	14.0	2.0	9.0	8.0	0.7	0.5
" 후	11-16	육성비육사료 (이유시-생체품 300kg)	14.0	2.0	9.0	8.0	0.7	0.5
" 전	11-30	큰소비육(II) (300kg 출하시)	11.0	2.0	10.0	10.0	0.5	0.3

구분	등록번호	사료의 명칭 및 용도	사료의 성분량(%)					
			조단백질	조지방	조섬유	조회분	칼슘	인
변경후	11-17	큰소비육사료(II) (생체풀 300kg-출하시)	이상 11.0	이상 2.0	이하 10.0	이하 10.0	이상 0.5	이상 0.3
· 전	11-34	주문착유특수사료	17.0	2.0	9.0	10.0	0.7	0.5
· 후	11-18	주문착유사료(III) (주문용)	17.0	2.0	9.0	10.0	0.7	0.5
계		18 개 품목					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87 호

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공고 707 호 (84.11.24)
및 569 호 (84.9.26) 로 공람공고
한 공릉동 구도로 확장공사의 1 개
소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아래 사

업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
계획 인가하고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
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
보인다.

1985. 9. 7.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내용

사업시행지	사업종류	규모	착공일	준공예정일
공릉동 329-208 의 52 필지	도로확장공사	B = 15 L = 1100 A = 165a	84.11. 1	86.12.31
수유동산 162-18 의 8 필지	"	B = 6 L = 150 A = 9 @	84.	86.12.31

3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4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건물의
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
외의 권리명세서 (별항)

5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
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이해관계인
의 주소, 성명 (별항)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588 호

도시계획시설 (하수도, 도로, 공원) 지적 승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 423 호 (85.6.26) 제 438 호 (85.7.2) 제 475 호 (85.7.12) 제 502 호 (85.7.27) 로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도

시계획시설 (하수도, 도로, 공원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면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(445-8705)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9. 7.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하수도)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 (㎡)	비고
신설	하수도	성동구 용봉동 203 일대	2,918	
"	"	" 군자동 204 일대	2,425	
"	"	" 옥수동 79 일대	2,345	

나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조서

구분	분류	등급	폭 (m)	연장 (m)	시점	종점	비고
기정	소로	2류	8	366	군자동 204-34	송정동 72-8	L=46m 폐지
변경	"	"	8	320	" 204-108	" 72-8	
기정	"	3류	6	140	" 204-34	" 193-3	L=35m 폐지
변경	"	"	6	105	" 204-168	" 193-3	
기정	"	"	6	120	광장동 259-7	광장동 266	일부구간 위치변경
변경	"	"	6	120	"	"	

다. 도시계획시설 (공원) 지적승인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 (㎡)	비고
기정	어린이공원	옥수동 79 일대	3,212	
변경	"	"	2,198	감 1,014㎡

라. 따로 붙인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 생략)

1985년 9월 2일 령제 323 호
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국재무과
 지방행정사무관 황 호 완
 행정 사무관에 임함.
 체육부 체육과학국 지도육성과 근무
 를 명함.

1985년 9월 5일 령제 324 호
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국장
 지방서기관 김 영 준
 서기관에 임함.
 서울특별시 성동구 총무국 국장에
 보함.

서울특별시 내무국
 지방서기관 신 중 식
 서기관에 임함.
 서울특별시 민방위국 운영과 과장에
 보함.

대 통 령

정 정

1. 시보 (1,165 호 1985년 8월 23일)
 에 게재된 인사발령 제 313 호 내용
 의 오기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
 다.

1985. 9. 9.
 서울특별시 장

다 음

페이지	오	정
23	목동지구개발사업소계획계장	목동지구 개발사업소 계획과장